

의 건 서

청 원 전 명	중동 쓰레기소각장 유해여부 판단 및 대책에 관한 청원	
청 원 인	주소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75-21
	성명	이 연 리
소 개 의 원	김 일 섭 의원	
의결 년월일	93. 7. 15. 11:00	
내 용	○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향유할 수 있는 시민의 환경보호와 쓰레기 처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 중동지구 쓰레기 소각장시설을 함에 있어 시민의 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행정계획의 신뢰를 보다 돈독히 하기 위하여 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것임. 사 회 산 업 위 원 회 위 원 장	

건축공사상주감리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의안번호	187
의 건	제21회
년 월 일	(93. 7. 19)

제출년월일 : 93. 6. 2

제 출 자 : 도시건설위원회

□ 조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건축공사 감리중 상주감리 대상에 대하여 건축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

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토록 되어 있으나 상주감리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타 신도시와 같은 부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를 조사하여 앞으로 상주감리가 철저히 시행되도록 조치하기 위함임.

□ 조사기간

- 1993년 2월 20일-5월 20일(90일간)

□ 대상기관

- 도시계획국 주택과(상주감리 대상건축물)

□ 조사방향

- 상주감리 실태파악 및 분석
- 건전한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생활 안정 및 재산권 보호
- 건축행정 개선대책 강구

□ 조사실시 경과

- 조사반 편성

반 장	조 사 위 원	사무 보조 직원
강신권위원장	장명진, 강문식, 김홍식, 남연희, 박노운, 박재덕, 양오식, 양재오, 오강일, 이상명, 이영자, 임광인, 임근규 의원	• 전 문 위 원 김상배 • 지방행정7급 이승표 • 속 기 사 김현정

○ 세미나 개최

- 일 시 : 93. 3. 10. 14:00-17:00
- 장 소 : 시청 2층 상황실
- 참석자 : 도시건설위원(강신권, 장명진, 강문식, 박노운, 박재덕, 양오식, 양재오, 오강일, 이강진, 이영자, 임광인, 임근규 의원)
타 상임위원(윤호산, 정원남, 한도한 의원)
- 강 사 : 최찬환 박사(서울시립대 교수)
- 내 용 : 개정건축법 및 상주감리 발전방향

○ 조사실시

일 시	대 상 기 관	조사장소	조사방법	비 고
93. 3. 29 13:00- 17:00	• 중동신도시 시영아파트	• 아파트내 노인정	• 의견청취 • 질의 • 답변	

일 시	대 상 기 관	조사장소	조사방법	비 고
93. 4. 13 10:00 - 17:00	• 중동신도시 연대책임감리 제5조 16-2BL(청구) 15-1BL(현대산업, 현대건설, 라이프) 18-3BL(신라)	• 연대책임감리 제5조 사무실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현장확인	
	• 중동신도시 공동감리단 제2조 15-2BL(동아, 삼환, 동성) 9-2BL(한양, 한신, 광주고속) 13-2BL(우성) 15-3-2BL(동원)	• 공동감리단 제2조 사무실	• 현황보고 청취 • 질의 • 답변 • 현장확인	
93. 4. 20 10:00 - 17:00	• 소사구 송내동 368 뉴서울주택 • 소사구 심곡동 671-1 대신증권 • 원미구 춘의동 127 유신토건	• 현장감리 사무실 " "	• 현황보고청취 • 질의 • 답변 • 현장확인 " "	

□ 조사결과

- 지적건수 : 14건
- 내 용

소 관 별	주 요 조 사 사 항	지 적 사 항	비 고
• 중동신도시	• 입주주민 불편사항 실태파악 • 입주 후 부실공사 발생 유형 실태파악	• 아파트 정문앞에 횡단보도 및 비스승강장 설치 요망 • 엘리베이터 용량부족으로 잦은 고장 (10개동 중 7개동) • 열계량기 불량으로 잦은 고장 • 배란다의 배관 불량자체 사용으로 누수 발생함. (15동 105~107호)	• 자치회와의 간담회 실시 로 실태파악

소 관 별	주 요 조 사 사 항	지 직 사 항	비 고
• 중동신도시 (연대책임 감리 제5조, 공동감리단 제2조) • 일반지역 (소사구 368번지 뉴서울주택 외 2개소)	• 상주감리 실시여부 확인 • 현장대리인 상주여부 확인 • 현장대리인과 상주감리자의 업무 협조 실태조사 • 감리사무실의 지방서 비치여부 확인 • 콘크리트 강도시험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는가 • 건축자재의 품질시험은 양호하게 이루어 지는지 • 단열재 시공 및 내부 마감재료는 적법하게 시공 되었는지 •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 감리일지의 작성여부	• 중동신도시의 연대책임감리, 공동감리단은 상주감리를 잘 이행하고 있으며, 일반지역의 상주감리 상태는 미흡하였음. • 현장확인 16개소 중 5개소 현장의 현장대리인이 부재 중이었음. • 대부분이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이 별도로 임명되어 있어 상주감리자는 주로 현장소장과 업무 협조가 되며 건축주와 감리자간에는 고객관계로 맺어져 실제적인 감리가 어려운 실정임. • 중동신도시 공동감리단 제2조의 유성건설 지방서 이외는 모두 비치되어 있었음. • 1차 타설전에 시료 채취하여 슬럼프시험을 하고 2차 일주일후 3차 28일후에 강도시험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준강도 이하로 떨어지는 레미콘은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잘 실시되고 있음. • 품질검사는 자체 또는 국립시험연구소에 의뢰하여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음. • 시공은 잘되고 있으며 일부 내부 공사 마무리시 벽면, 천장의 몰탈, 도배 등의 처리가 미흡함. • 안전관리는 노동부에서 자주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일부현장의 안전망 설치가 안되어 있음. • 감리일지를 매일매일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연대책임감리 제5조는 감리일지를 작성치 않고 있음이 확인됨.	• 세부적인 사항은 조사결과 처리의견 참조

소관별	주요조사사항	지적사항	비고
	• 건축공사 현장의 주변 정리는 잘 정돈 되었는지 • 안전표지판은 설치되어 있는가 •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대책강구는 하는지	• 주변정리는 잘되어 주민통행, 교통소통에는 불편 없도록 정리하고 있음. • 설치되었음. • 민원사항은 건축주가 최대한 수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의 무리한 요구는 집행부의 중재로 해결하고 있음.	

□ 조사결과 처리의견

○ 처리의견

• 상주감리제도 개선 방안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시에 조치 및 처리토록 이송

○ 세부내용: 별첨

□ 상주감리제도 개선 방안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상주감리제도 개선 방안

실태

- 공사감리자 선정은 건축주가 직접 선정토록 되어 있음.
- 건축주와 감리자간에는 고객관계로 위법시공시 시정처리 미흡
- 공동주택은 분야별 종합감리가 되고 있으나, 일반건축은 감리자 1명으로 전기, 토목, 설비의 전문분야 감리 부실
- 감리자는 위법시공시 시정통지, 이를 위반시 시장에게 보고의무만 있으므로 사실상 책임 부여 미흡
- 감리비는 요율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서로의 이해관계로 명목상 최소한의 감리비만 받고 감리 실시
- 따라서 건축주와 감리자간의 묵인하에 실질적인 감리가 안되고, 형식적 감리를 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음.

개선방안

- 시공자와 감리자간의 밀착관계 차단
 - 감리자를 행정기관에서 직접 지정 또는 전담감리단 구성 운영
- 공무원과 감리자의 권한 이원화
 - 공무원은 행정절차 업무와 건축법규상 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감리자는 건축시공 전반 지도 감독을 전담함.

- 감리자 권한 부여

- 공사 지도감독 권한을 최대한 부여하고, 시공상의 문제 발생시 처벌 규정 강화

- 따라서 실질적인 감리가 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감리일지 작성 미흡

- 상주감리자는 건축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시공상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통지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하나 대부분 구두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있어, 시정사항이 기록으로 남지 않고 있는 바, 각 공사현장에 통일된 양식을 파급하여 기록정리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요망

- 감리사무실 통합 운영

- 연대책임감리 제5조는 감리자가 사업주체별로 따로 떨어져 각 현장에서 감리를 실시하고 있어 실제적인 연대감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를 한 사무실로 통합운영하여 서로의 감리 현황을 파악 조치할 수 있도록 시정 바람.

- 마무리공사 처리 미흡

- 공사감리가 법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은 잘 이루어 지는데 비해 큰 하자 발생요건이 안되는 벽면분탄, 천장 물탄, 벽지도배 등 소홀히 생각되는 부분이 마무리 처리가 미흡한 바 입주 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공사 마무리처리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현장대리인 공사현장 배치 미흡

- 건축공사현장에는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건설기술자인 현장대리인을 선정 상주토록 배치하여 공사추진의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나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현장대리인을 선정만 하여놓고 배치하지 아니하고 현장소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어 업무의 이원화 및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철저히 확인하여 조치 바람.

(현장확인시 현장대리인이 부재중인 시공업체)

시공업체명	대표자	위 치	현장대리인
극 동 건 설	김 명 근	중동신도시 18-3BL	이 광 중
(주) 동 성	최 병 석	" 15-2BL	임 병 국
동 원 건 설	이 호 인	"	최 재 천
한 신 공 영	박 명 남	" 9-2BL	이 정 배
뉴 서 울 주 택	강 현 식	소사구 송내동 368	최 근 천

- 감리일지 작성 철저

- 신라아파트 시공자인 극동건설의 상주감리자는 건축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매일 감리활동사항을 감리일지로 작성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나 감리일지의 미작성으로 상주감리 근거가 없어 실시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감리일지 작성 비치토록 조치바람.

- 시정명령 불보철지

- 건축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 상주감리자는 건축주와 시공자에

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동신도시 연대책임감리 제2조는 시공자인 극동건설에게만 통
보하였는 바 앞으로는 규정대로 이행토록 조치바람.

• 건축공사 시방서 비치 미흡

—중동신도시 공동감리단 제2조는 우성아파트 건축공사 진척도가 1층을 시공하고 있는 상태
인데 감리의 필수인 시방서가 감리사무실에 미 비치되어 있는 바 현재까지의 감리가 부실
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시방서 비치 및 공사감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
바람.

• 감리자 상주감리 철저

—소사구 송내동 368번지 뉴서울주택은 현재 공사 진척도가 지하실 완공단계에 이르렀는데
상주감리자 최병국, 김상신, 최승열, 조한복 모두 상주치 않고 있음이 93년 4월 13일 확인
되었으며, 건축감리 최병국은 부실공사시 책임이 없는 무자격자인 강중서를 대리근무케 하
였으며 전기, 설비, 토목감리는 필요시에만 상주 하고 있으며 이는 상주감리의 기본 취지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즉시 조치 바람.

—유신토건이 시공하는 원미구 춘의동 127번지상의 건축공사감리는 주화중, 홍일화, 최성규,
원종목이 상주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93년 4월 20일 확인한 바, 당초 신고된 건축감
리자 주화중이 감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93년 4월 15일부터 변경된 양인승이 신고 미필상
태에서 감리를 하고 있었으며, 전기, 설비의 감리자인 홍일화, 최성규는 상주감리를 하지
않고 필요시만 시공자측의 요구에 의해 감리에 응하고 있으므로 상주감리 미 이행으로 부
실공사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규정대로 감리가 철저히 시행되도록 조치
바람.

• 안전망 설치 철저

—건축공사시 안전시설을 하고 공사를 하여야 하며 특히 2층이상의 공사시는 안전망을 설치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신토건 공사현장은 안전망을 미설치한 상태에
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어 건축자에게 낙하시 사고의 위험이 따르니 완벽한 안전관리가 되도
록 조치 바람.

• 엘리베이터 고장 수리

—중동신도시 시영아파트 10개동 중 7개동이, 엘리베이터 용량부족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오
니 시공자와 협조,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 요망.

• 부실공사 보수

—중동 시영아파트 15동 105-705호의 배란다의 배관파이프 불량자체 사용으로 누수현상 발
생하오니 시정조치 요망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설치

—중동 시영아파트 정문앞에 버스정류장 설치 및 횡단보도 설치 요망

• 건축공사 상주감리 및 현장대리인 상주여부 지도감독 미흡

-건축법 제21조 및 건설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상의 위반사항을 시정 및 지도 감독하여야 하나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상주치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이 미흡한 사항으로 시정조치 바람.

부천시의회규정

목 차

- 부천시의회포상규정(부천시의회규정제1호)
- 부천시의회기및배지등에관한규정(부천시의회규정제2호)
- 부천시의회방청규정(부천시의회규정제3호)
- 부천시의회참관에관한규정(부천시의회규정제4호)

부천시의회포상규정

1993. 6. 11

부천시의회규정 제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사회도외와 미풍양속의 정화 양양에 출선수범한 경우
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배)은 의회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여 선양시킨 시민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